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

□ 배경

- IT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SNS마켓, 숙박공유 등의 사업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팽창됨에 따라, 이러한 신종사업에 대한 세원관리 필요성 대두
 -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 별도 마련으로 세원관리 강화

□ 추진 방안

- 거래구조, 영리적 성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관련법령(부가세법§26① 및 부가세령§42),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종사업에 3개에 대한 업종코드 별도 신설
- 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콘텐츠(내용물)에 관계없이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광고 삽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이나,
 - 인적 또는 물적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인적용역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구분하여 업종코드 신설

* 인터넷 개인방송 부가세 과세여부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19.3.4.)
- ② SNS마켓은 통신판매업에 포함하여 업종코드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조정
- ③ 숙박공유는 민박업(551005)과 유사한 산업활동에 해당하나,
 - 일반인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에게 대여하는 공간·장소 공유 개념이므로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에 포함하여 업종코드 신설

□ 업종코드 신설 및 적용범위 변경

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현행 (2019귀속)				개정 (2019귀속)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 909	기타 자영업	기타 자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940 909	기타 자영업	기타 자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 (940306)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940 306 (신설)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921 50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921 50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921 505 (신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② SNS마켓

현행(2019귀속)				개정(2019귀속)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1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구입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제외> · 전자상거래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525101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특정하는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예시) ·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외>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 SNS마켓(525104)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525103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525103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SNS마켓(525104)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현행(2019귀속)				개정(2019귀속)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4 (신설)	통신 판매업	SNS 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 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 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③ 숙박공유

현행(2019귀속)				개정(2019귀속)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51005	일반 및 생활 숙박 시설 운영업	민박업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 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551005	일반 및 생활 숙박 시설 운영업	민박업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 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제외> ·숙박공유업(551007)
				551007 (신설)	일반 및 생활 숙박 시설 운영업	숙박 공유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적용 시기

- '19.9.1.부터 적용